



2015년 3월을 시작으로 풀톤 카운티 학교에 학생을 등록하는 사람은 킨더가든, 6학년, 9학년, 첫 등록 시 그리고 가족/학생의 주소 변경 시 학군에서 인정한 두 가지의 거주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왜 거주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까?

2015년 2월, 학군은 거주 확인에 대한 학교 입학 규정(JBC)을 변경하였습니다. 규정은 더 이상 가정들이 거주 확인 진술서(AOR)를 매년 학생 등록 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가정들이 2가지의 거주 증명을 풀톤 카운티 학교 첫 등록 시 또는 킨더가든, 6학년, 9학년 등록 시 그리고 주소 변경 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거주 증명은 반드시 학군이 인정한 거주 확인이 가능한 것 이어야 합니다 (아래 참조).

**현재 수도, 전기 또는 가스 청구서 한 개 그리고 다음 리스트에 있는 거주지 서류 한 개.
두 가지 서류에 반드시 학부모/보호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모기지 청구서 사본
유효한 운전 면허증/ 주 정부 ID
주택 판매 계약서 사본
HUD 주택 서류/섹션 8
홈 오너/렌트 보험 등록 카드

현재 은행 스테이트먼트
현재 급여 명세서
현재 HOA 청구서
현재 아파트/하우스 임대계약서

거주 증명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첫 등록시, 킨더가든, 6학년, 9학년 등록시 두 가지의 거주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때 제출할 수 없다면 30일 이내에 요구된 거주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시 등록 기간 30일 마지막 날까지 거주 증명이 제출되지 않으면 학생이 제적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록된 사람에게 학생의 제적 10일 전 통보할 것 입니다.

만일 내가 부모/보호자가 아닌 학생을 등록하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가족이 정상참작이 가능한 어려운 상황이 되어 학생(들)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살게 되는 경우, 지원과 추후의 안내를 위해 학교 소셜워커가 연락 됩니다.

만일 내가 정확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거주 증명을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서류를 풀톤 카운티 학군에 제출하고 허위로 선서를 하는 것은 O.C.G.A. §16-9-2, §16-10-20 그리고/또는 §16-10-71 에 의거하여 조지아주 형법에 위배되며 \$1,000.00 미만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O.C.G.A. 13-10-71.

만일 나의 거주 정보에 의문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의문이 갈 만한 거주 상황은 추가 조사를 위해 학군의 거주 확인 담당자에게 이관됩니다. 거주 확인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거주 확인 및 조사에 다음의 부분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법적으로 자신들이 그 기록된 주소지에 실제 살고 있다고 확인하는 서명되고 공증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거주 확인 또는 그 기록된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보고한 학생을 학교 담당자가 인터뷰 합니다.
- 학생(들)의 지각, 출석, 버스 승차 기록을 확인합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추가의 거주 증명 서류를 요구되는 대로 제출합니다.
- 거주 확인 담당자 그리고/또는 학교 담당자가 가정 방문을 합니다.
- 거주 확인 담당자 또는 학교 담당자가 기록된 주소지를 조직화하여 관찰 합니다.

만일 내가 어려운 지경인 것을 인정받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의 전학 및 곤궁한 처지는 인정받은 내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므로써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곤궁한 처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업무는 학생 배치 부서로 전달됩니다.